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2년 10월호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위원회운영규칙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다.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감사인 지정제도 보완)

나. 금융위원회운영규칙 (정책적 판단이 필요치 않은 사항 위임 등 기존 위임사항 정비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2022/9/29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'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'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(제15조, 별표 3, 별표 4, 별표 4의2)

-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상응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감사인 군 분류 기준을 개선
- 품질관리인력,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·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, '가군'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(회계사 수)을 기존보다 완화(600명 이상 → 500명 이상)
 -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·다군의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〈감사인 '가군' 분류 요건〉

구분기준	기존	개정
공인회계사 수	600인 이상	500인 이상
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	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20% 이상	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% 이상
손해배상능력	200억 이상	1,000억원 이상
감사업무 매출액	500억 이상	삭제
상장사 감사수	100사 이상	삭제
총족요건	5개 중 4개 총족	3개 모두 총족

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

-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(제2조)을 마련
- 미설계 2%, 미운영 2%, 일부미흡 1% → 최대 30% 차감

〈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〉

개선권고사항	기존	개정
미설계	신설	2%
미운영	신설	2%
일부 미흡	신설	1%
차감한도	-	30%

— 하향 재지정 제도를 일부 제한하되 동일군 재지정 제도를 신설

—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 비상장사를 우선 지정

-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·조정

〈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〉

구분기준	기존	개정
품질관리인력	신설	매년 12월 ~ 익년 3월 운영
사전심리	신설	사전심리 의무화
감사시간 관리	신설	1년간 유예
품질관리감리 지적	신설	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

-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(제24조, 제25조)
 -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이 구두 요청한 자료는 사후적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의무화
 -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대리인이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
 -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앞당겨 정하도록 시행세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복사도 허용

나. 금융위원회운영규칙 (2022/9/3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· 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, 기존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(제6조, 별표 3)
 - 광범위한 대상기관 수(3,000여 개 사), 단순 제출 여부만을 판단하여 과태료(3천만원 상한)를 부과하므로 위임사항에 추가
- 투자자문업자,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(별표 5(16))
 - 개정 자본시장법(2021. 10.)에 따라 실적부진 등으로 이미 영업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 결정을 하므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음
- 산은 · 기은 · 캠프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경영참여 방식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(별표 5)
 - 금융기관인 GP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만 가능하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금융위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펀드재산 전체를 비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 가능
 -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실무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,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
-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(별표 7, 8, 9)
 -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하여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행정 효율 제고

□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(별표 11)

- 리츠 등은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금산법 출자승인 취지와 관련성이 낮아 심사 실익이 적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

□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(별표 14)

-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제·개정안은 금융위 內 회계제도심의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업무 절차상 위원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

□ 금융혁신지원 관련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(별표 53)

- 금융혁신법 시행(2019. 4.) 당시 22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면서 6개월마다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단순 통계보고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음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항목 추가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)
- 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 개선)
- 라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9/26 개정 · 2022/9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신청인이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인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상장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모회사가 주주보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대상으로 정함(별표 2의2)
 -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 한함
 - 다만,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(자회사)의 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적용제외 가능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9/27 개정 · 2022/9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를 질적심사하여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
 - 변경 · 추가상장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여 상장법인의 변경 · 추가상장 신청 업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(별표 6)

-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후 5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 보호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
 - 자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 또는 유가 증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
- 다만, 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, 상장신청인인 자회사가 주된 영업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

□ 변경·추가상장 신청 서류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등(제47조, 제54조, 별표 5, 별표 14, 별지 제25호 서식)

- 변경·추가상장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서 서식 정비
-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 정비 및 거래량·주식분산 미달 관련 소액주주 정의 명확화

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9/30 개정·2022/10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50인 이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(별표 1 제3항 제1호 가목(2))

- (비율)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(기존) 5% 이상 → (개정) 3% 이상

□ VC등 대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(별표 1 제2항 제1호 가목(3))

- (기간)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 이후 → (개정) 5년 전의 날 이후
- (대상) VC·전문투자자 → (개정) 증권상장법인까지 확대
 - 단, 해당 증권상장법인의 투자 목적,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
- (비율) 발행주식(증권) 총수의 5% 이상 → (개정) 3% 이상
 -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 최근의 사모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해당 사모 실적 가산 시 최초로 3% 이상이 되는 그 사모까지로 한정

라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2022/9/20 개정 · 2022/9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수용하여 사회책임투자(SRI)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 및 관리하고, 지속가능연계채권 수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융도채권 개념 도입(제2조 제5호 · 제6호 신설)
 - 지속가능연계채권(Sustainability-Linked Bond)을 '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과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무증권'으로 정의
 - 조달자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녹색채권, 사회적채권, 지속가능 채권을 조달자금융도채권으로 범주화 함
 - 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「녹색채권 가이드라인(Green Bond Guidelines)」,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녹색채권 원칙(Green Bond Principles)」, 국제기후채권기구의 「기후채권 기준」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 - 사회적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사회적채권 원칙(Social Bond Principles)」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 -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(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)」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 도입(제4조 제2호 라목 신설)
 -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(Sustainability-Linked Bond Principles) 및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 등을 준거원칙으로 정함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명시(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)
 - 등록신청서,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, 투자설명서, 사전 외부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등록 가능
-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사항 명시(제7조 제2항)
 - 종목명 · 표준코드 등 종목 정보, 준거원칙, 사회책임투자채권 구분표시,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, 투자설명서, 사전외부평가서류 및 사후보고서류(성과보고서, 외부평가보고서) 등을 공시
-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지속가능연계채권 성과보고서 검증 의무화, 성과보고서 및 외부평가보고서 제출시한 등 명시(제8조)

- 연간 핵심성과지표의 성과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및 이를 검증한 외부평가보고서 제출
- 지속가능성과목표 최종 판단일이 속한 연도분까지 매년 제출하되, 최초 제출은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제출하고, 그 이후에는 매 연도말까지 제출
- 보고서 제출시기별 구분, 조달자금 사용 금액,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

□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 취소사유 및 등록 취소 공지 근거 마련(제9조 제1항)

- 등록취소 희망시, 상장폐지시, 성과보고서 또는 외부평가보고서 미제출,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

□ 등록 신청서상 지속가능연계채권 관련 기재사항 추가(별지 제1호 서식)
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, 핵심성과지표 및 판단일을 추가

□ 그 밖에 규정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 등

-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 개념 명시(제2조 제9호)
- 준거원칙을 '제정기관별' 구분에서 '사회책임투자채권 유형별' 구분으로 변경(제4조 제2호)
-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영향보고서를 별도로 명시하고 상장폐지 시까지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(제7조 제2항 제5호,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·제3항, 제9조 제1항 제4호)
-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정보공시사항 등록으로 인한 법적, 행정적 면책사항을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확약하는 내용 추가(별지 제1호 서식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방문판매 인력의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투자자문·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)
- 다.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(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 전달 기한 연장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2/9/15 개정 · 2022/12/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방문판매 인력의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 등 건전한 방문판매 영업환경 마련
 - 이를 위해 방문판매인력의 요건 금융투자회사의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관리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방문판매등 개념 정의(제2-11조의2 제1항 신설)
 - 방문판매, 전화권유판매, 화상권유판매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청약에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
 -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·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
 - 방문판매: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장 외의 장소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
 - 전화권유판매: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
 - 화상권유판매: 영상통화,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화상을 통해 상호 간에 얼굴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
- 방문판매인력의 요건(제2-11조의2 제2항 신설)
 - 방문판매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
 - 방문판매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할 것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 이수 및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할 것

□ 금융투자회사의 소속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의무화(제2-11조의3 신설)

-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함(제2-11조의3 제1항)
 - 작성하는 명부에는 소속회사, 성명, 연락처, 인력등록현황, 교육 이수현황을 포함
-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제2-11조의3 제2항)
- 방문판매인력의 직무역량 및 윤리의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방문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함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2/9/28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자문·일임업과 관련한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개정(2022. 8. 9.)등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(별지 제1호) 개정
- 투자자문 대상 자산 현황 신설 및 투자자문·일임업에 관한 사항 양식 변경 등
- 투자자문·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 방법(별지 제27호) 개정
- 투자자문재산 현황 및 투자일임재산 현황 양식 변경

다.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(2022/9/30 개정·2022/10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산대사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2022년 2분기 자산대사 과정에서의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 전달 기한 연장(1.4)

- (기존)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을 확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기준일(매분기말)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정함
- (개정) 기한 연장에 관한 업계 건의 및 펀드 목록 확정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연장

□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(3.1.4 ~ 3.1.5)

- (기존) 증권의 자산대사 경우 차입·대용·대차·보유만으로 구분하여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며,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류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재량의 필요성 제기
- (개정) 담보로 제공한 증권(환매조건부 매도 시 제공하는 증권 등, 대용증권은 제외)도 자산대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
 - 증권 분류를 세분화하고 분류여부 및 방법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
 - (기존) 차입·대용·대차·보유 4종 → (개정) 차입·대용·대차·담보·보유(대용·대차·담보제공 상태가 아닌 순수 보유분을 의미) 5종
 - (예시) 분류하지 않고 모두 보유상태로 간주 또는 차입·대차·보유 3종으로만 구분 또는 차입·대용·대차·담보·보유 5종으로 구분하되 차입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 복수 상태에 해당 시 차입 > 대용 > 담보 우선순위 설정 등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